

1. 의결주문

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기후변화로 인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염특보의 단계 중 기존의 주의보·경보의 상위단계인 중대경보를 신설하고, 폭염특보의 세부 분야로서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하는 한편, 기존 폭염특보와 한파특보의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폭염특보를 주의보, 경보, 중대경보로 구분하고 폭염특보의 세부 분야로서 열대야주의보 신설(안 제8조의2제1항)
- 나.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 발표 기준 추가 및 폭염특보(주의보, 경보)와 한파특보 기준 명확화(안 별표 1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협의 전

대통령령 제 호

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8호의 경우에는 주의보, 경보 및 중대경보로 구분한다.

제8조의2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폭염(열대야를 포함한다)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특보의 기준(제8조의2제2항 관련)

1. 호우, 대설, 태풍 등의 특보

종 류	주 의 보	경 보
호 우	3시간 누적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	3시간 누적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
대 설	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cm 이상 예상될 때	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20cm 이상 예상될 때. 다만, 산지는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30cm 이상 예상될 때를 말한다.
태 풍	태풍으로 인하여 강풍, 풍랑, 호우 또는 폭풍해일 현상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	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. 강풍, 풍랑 또는 폭풍해일 현상이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나.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
강 풍	육상에서 풍속 50.4km/h(14m/s) 이상 또는 순간풍속 72.0km/h(20m/s) 이상 예상될 때. 다만, 산지에서는 풍속 61.2km/h(17m/s) 이상 또는 순간풍속 90.0km/h(25m/s) 이상 예상될 때로 한다.	육상에서 풍속 75.6km/h(21m/s) 이상 또는 순간풍속 93.6km/h(26m/s) 이상 예상될 때. 다만, 산지에서는 풍속 86.4km/h(24m/s) 이상 또는 순간풍속 108.0km/h(30m/s) 이상 예상될 때로 한다.
황 사	-	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(PM-10) 농도 $800\mu\text{g}/\text{m}^3$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건 조	실효습도 35% 이하의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	실효습도 25% 이하의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한 파	10월 ~ 4월 사이의 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.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℃ 이상 하강하여 3℃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℃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나. 아침 최저기온 -12℃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	10월 ~ 4월 사이의 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.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℃ 이상 하강하여 3℃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℃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나. 아침 최저기온 -15℃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
	때	때
풍 랑	해상에서 풍속 50.4km/h(14m/s)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 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	해상에서 풍속 75.6km/h(21m/s)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 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
폭풍해일	천문조, 폭풍,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	천문조, 폭풍,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

비고:

1. “실효습도”란 물체의 건조한 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수일 전부터 현재까지의 습도를 가중하여 산출한 지수를 말한다.
2. “천문조”란 달이나 태양과 같은 천체의 인력(引力)에 의하여 일어나는 조수간만의 차를 말한다.

2. 폭염특보

종 류	주 의 보	경 보	중 대 경 보
폭 염	일 최고 체감온도 33℃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	일 최고 체감온도 35℃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	일 최고 체감온도 35℃ 이상이 2일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. 일 최고 체감온도 38℃ 이상이 1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나. 일 최고기온 39℃ 이상이 1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열 대 야	일 최고 체감온도 33℃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, 밤 최저기온이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	-	-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2(특보) ①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특보는 다음 각 호의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 다. 이 경우 특보는 주의보와 경 보로 구분한다. <단서 신설>	제8조의2(특보) ① ----- ----- ----- --. ----- ----- . 다만, 제8호의 <u>경우에는 주의보, 경보 및 중대 경보로 구분한다.</u>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8. 폭염</u>	<u>8. 폭염(열대야를 포함한다)</u>
9. · 10. (생략)	9. · 10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